

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신청기관	명칭	법인등록번호
	주사무소(주소)	전화번호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
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36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교육시설 현황 1부 2.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능방재 관련 장비 현황 1부 3.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절차에 관한 자료 1부 4. 강사 보유 현황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.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
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
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서류 검토	➔	지정서 작성·발급	➔	지정서 수령
신청인		원자력안전위원회		원자력안전위원회		원자력안전위원회		신청인